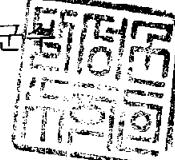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28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12. 8.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지난 1.17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입법화된 대형마트·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조례가 타 자치 단체에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판결이 남에 따라,
- 나. 관련 규정을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 마트·SSM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군수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·명령권을 유통산업 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 (안 제13조의2 본문)
영업시간 제한은 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의 범위 이내”로 함.
(안 제13조의2 제1호)
- 나. 의무휴업일은 “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”로 함.
(안 제13조의2 제2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 참조
 - (2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(4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2. 7. 25 ~ 2012. 8. 15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 중 “을 제한하고,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”를 “제한을
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3조의2 제1호 중 “로 한다”를 “의 범위 이내”로 한다.

제13조의2 제2호 중 “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.”를
“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참고 1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**□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**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영업시간 제한
 2. 의무휴업일 지정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